

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

[1] 이유

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이다.

[2] 주요 골자

1.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(법 제25조) 했다.

2.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책임감리대가기준을 폐지(법 제27조의2)하였다.

3. 감리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영업활동의 제한을 폐지(현행 제28조의5 삭제)하였다.

4.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일지 보고제도를 폐지하여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(법 제32조)했다.

[3]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

제5조제1항 중 “진흥·개발·활용과 건설공사설

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” 을 “진흥·개발·활용 등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” 를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제6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의4제1항 중 “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등 용역업자가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” 을 “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” 로 하고,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

2.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

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

3.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

4.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·재료 등의 품질기준·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
5. 제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6.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

7. 설계기술·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

8.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

9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
제20조의5제2항 중 “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 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” 을 “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”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“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” 를 “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로 한다.

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의5제1항중 “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” 를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” 로 한다.

제22조제1항중 “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

설계등 용역업자로” 를 “설계등 용역업자로” 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건설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자등은” 을 “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” 으로, “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” 를 “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” 로 “품질관리 또는 건설자재·부재의 품질보증에 따른” 을 “품질관리에 따른”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“지정받고자” 를 “등록하고자” 로 하며 동항에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1조제3항중 “지정기준” 을 “등록기준” 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등)” 을 “(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)”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“지정받은” 을 “등록한” 으로 하고, 동항제1호 중 “지정을 받은” 을 “등록한” 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“지정기준” 을 “등록기준”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2의 제목 “(책임감리대가의 기준)” 을 “(책임감리대가의 지급)”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제10호 중 “감리원 자격이 없는 자” 를 “감리원자격이 없는 자 및 이종으로 소속된 자” 로 하고 동조 제2항제7호 및 동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 감리

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및 감리일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”를 “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타”를 “소속공무원 기타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5조중 “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공사감독자는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3제1항 중 “5분의 1을”을 “10분의 1로”로, “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”를 “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”로 한다.

제36조의5제2항 중 “선출하되,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선출한다.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한국건설기술인협회”를 “건설기술인협회”로 한다.

제36조의8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중 “한국건설기술인협회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협회”로 한다.

제36조의10제1항 중 “50명이상”을 “30인이상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13제2항중 “선출하되,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선출한다.”로 한다.

제36조의18 및 제3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0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2.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

제42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,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의3.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·검사업무를 대행한 자

제42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·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

3호의 2·제3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

3의2. 제25조제2항 병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

3의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(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)

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(1999.4.15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제1항,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계등)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·시설·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조(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.

제5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